#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SK증권㈜

2. 제재조치일 : 2023. 12. 21.

3. 제재조치 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136백만원) 부과
직 원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상당) 1명, 주의 2명

#### 4. 제재대상사실

### 가. 문책사항

(1)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가)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및「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및 제14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도

A팀은 트레이딩 시스템(HTS·MTS) 등 주요 운영서버(○○개)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장비에 대한 장애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여 2020.2.14.부터 발생한 스토리지 장비 전원공급장치의 고장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스토리지 장비 작동이 중단되어 2020.3.11. 09:57~13:30(약 3시간 33분)까지 HTS·MTS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고객계좌(340개)의 거래주문 미체결로 755 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 < 관련규정 >
- 1.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
-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4조 제4호

### (나)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및「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및 제29조 제3호·제6호·제8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운영체제, 데이터 베이스관리 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A팀은 2020.6.20. 네트워크 장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가용성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검증도 받지 아니하여 2020.6.22. 09:00~10:27(약 1시간 27분)까지 HTS·MTS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고객계좌(181개)의 거래주문 미체결로 251 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 1.「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
- 2.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및 제29조 제3호ㆍ제6호ㆍ제8호

# (2) 전산자료 보호대책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및「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3조 제1항 제11호 및 제29조 제3호·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B본부는 ② 상장을 대비하여 2021.3.8.부터 2021.6.3.까지 시세처리 서버 6대를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전체 사용기간에 대한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을 보존하지 않았으며

위 임대서버 6대를 운영환경에 적용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구성을 포함한 시스템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가용성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 검증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관련규정 >

- 1.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
- 2.「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3조 제1항 제11호 및 제29조 제3호ㆍ제6호